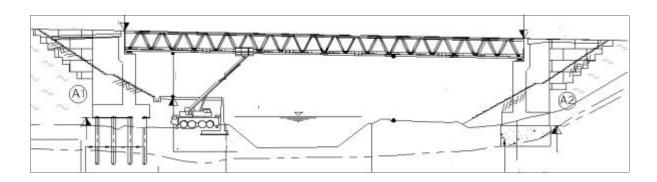
시하여야 한다.

- (4) 고소 작업차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자에게 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5) 고소 작업차는 전도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등침하가 없는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(6) 고소 작업차의 작업대 이외의 장소에서 조작을 할 경우에는 작업대 위의 근로자와 운전자 사이의 연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이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(7) 고소 작업차의 승차석 및 작업대 이외에는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8) 고소 작업차의 적재하증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(9) 짐을 매다는 등 고소 작업차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.
- (10) 고소 작업차를 주행시킬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(가) 유도자 배치
 - (나) 신호규정 준수
 - (다) 작업대의 높이와 붐 길이 등에 맞는 적정의 제한 속도 유지



<그림 9> 고소 작업차 작업

8.6 이동식 크레인 작업